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2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6나5638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정복인  
 속초시 온정로 24, 206동 102호 (조양동, 조양2주공아파트)

2. 김문선  
 속초시 온정로 24, 206동 102호 (조양동, 조양2주공아파트)

3. 김문삼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86, 109호 (효자동1가, 효성연립)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피고, 항소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일본국 동경도 천대전구환내 2정목 6번 1호  
 대표자 대표취체역 신도코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박종욱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861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8. 1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복인에게 42,857,142원, 원고 김문선, 김문삼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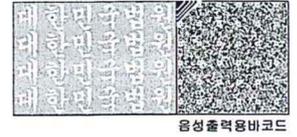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0쪽 제20행 "2012. 5. 24. 대법원 2009다22549호로"를 '2012. 5.



24. 대법원 2009다68620호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7 내지 9행 '이후 환송심에서 ~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후 환송심에서 여운택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다가 대법원에서 2018. 10. 30. 대법원 2013다61381호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환송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관련 소송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호 상고심 판결을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이라 하고,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호 파기환송 후 상고심 판결을 '2018. 10. 30.자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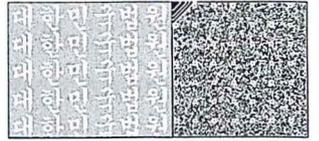
○ 제1심판결 제23쪽 제4행부터 제29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주장에 관한 판단

####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주관적인 장애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설령 원고들에게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다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구 일본제철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2005. 2. 경 또는 ② 청구권협정에 대한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던 2005. 8.경, 혹은 늦어도 ③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경 이후에는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 선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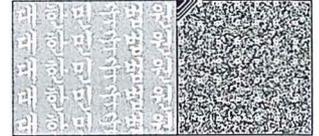
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 2) 판단

가)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준거법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법이 된다(현행 민법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소멸시효만이 규정되어 있어 일본법이 준거법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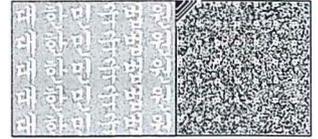


에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김공수에 대한 피고의 행위 및 그 결과발생이라는 불법행위는 1945년 광복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5. 1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다른 강제징용자들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 등(대법원은 같은 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피고로 한 2009다22549호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을 통하여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을 판시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는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망 김공수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② 이후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및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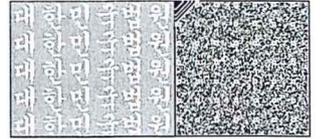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강제징용자들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③ 그런데 망 김공수와 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청구권,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서서히 부각되었고, 2005. 1.경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가 표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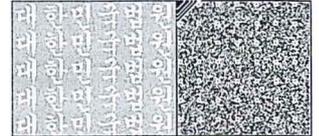
④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더라도,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개인별 불법행위의 존부 및 그 권리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법원의 재심판결의 경우와 달리, 강제모집 내지 징용자들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민관공동위원회가 표명한 내용은 '청구권협정이 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사할린 동포에 적용되지 않고,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거사 사건과 달리 위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 표명으로 망 김공수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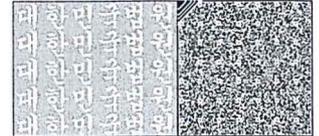
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승인될 수 없으며,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협정으로 망 김공수와 같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비록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인 피고가 자신들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일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협정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을 천명한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망 김공수 내지 원고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른 강제동원 내지 징용의 피해자들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한 적극적인 시도로 볼 수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⑥ 피고는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과 같은 강제징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강제징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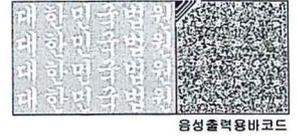
에 관한 사안에서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⑦ 한편,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하여 재상고심 판결이 2018. 10. 30.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다만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이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로 판시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 10. 30.자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그런데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망 김공수나 원고들로서는 위 판결에 기하여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망 김공수나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국 정부나 일본기업인 피고가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침략국인 일본국이나 이에 편승한 일본기업인 피고는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독려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현재까지도 청구권협정 관련 정보공개조치 거부하며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든 법적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경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시효정지에 준하는 기간보다 연장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5.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한성	<u>김한성</u>	
	판사	이차웅	<u>이차웅</u>	
	판사	양소은	<u>양소은</u>	





# 정본입니다.

201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손선화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